

행 정 명 령 서
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지역사회 집단감염을 막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.

가. 처분 대상 : 도내 외국인 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주

나. 처분 내용 :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별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'21. 3. 8 ~ 3. 12.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**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**

다. 처분 이유 :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내 외국인 근로자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 있음

라. 벌칙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1조

마. 관련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6조, 제49조

2. 이 행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3. 이 행정명령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고,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4. 문의사항 : 시·군 선별진료소

연번	지자체명	보건소	연락처
1	예천군	예천군보건소	054-650-8054

2021. 3. 5.

경 상 북 도 지 사